

<p>시오.</p> <p>○康明秀委員 康明秀委員입니다. 이것은 저희議員發議로 일부修正을 해서通過를 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p> <p>여기 내용에 보면 第28條에 監督 市長은公社의 業務를 監督하고 内務部長官도 또 監督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Central의 業務가 地方化가 되고 있고, 또 우리place公社의 資產 어떤 投資가 우리place自治團體에서 全額 投資를 해서 運營하는 place公社이기 때문에 지금 上位法인 公企業法에 問題가 좀 있다고 지난 번에도 指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同條例改正 없이도 地方公企業法 第73條, 第74條에 明文化가 되어 있기 때문에 執行業務施行에 지장이 없다고 사료가 되어 집니다.</p> <p>그래서 우리가 지금 地方化를 주장하면서place議員 손으로 條例를 그 地方化에逆行하는 그러한 條項을 저희들 손으로 通過시키는데 問題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현재 市廳에서 内務部에 公企業法 改正建議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條項만修正을 해서 다른 부분은 上程, 通過시키는데修正案 動議를 합니다.</p> <p>○委員長 朴泰源 다른委員님 말씀하시겠습니까?</p> <p>그러면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p> <p>○康明秀委員 修正案 내용은 第28條 監督第1項 “市長은公社의 業務를 監督한다” 두 번째는 과거 내용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第29條도 우리 현재 條例上程된 것에서 과거内容대로 報告 및 檢查에서 “市長은公社의 業務, 會計 및 財產에 관한 事項을 檢查할 수 있으며 필요한 報告를 命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修正하고자 합니다.</p> <p>○金鍾源委員 지금 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p> <p>○住宅局長 梁甲 현재는 市長은公社의 業務를 監督한다는데 公企業法이 바뀌면서 内務部長官과 市長, 内務部長官이 삽입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康明秀委員님 말씀하신 대로 内</p>	<p>務部長官 이것을 빼버리고 종전대로 그대로 市長은公社의 業務를 監督한다 이렇게 하자는 것입니다.</p> <p>○金鍾源委員 그런데 公企業法에 지금 内務部長官, 市長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條例에서 이것을 뺀다고 해서 效力이 있어요? 우리가 公企業法 改正建議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우리任意대로 條例에 刪除하는 것은 基本法에 違背할 것 같은데…….</p> <p>(「상관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p> <p>상관 없다면 좋습니다.</p> <p>○委員長 朴泰源 金鍾源委員님 理解가 있습니까?</p> <p>○金鍾源委員 네.</p> <p>○委員長 朴泰源 그러면 康明秀委員 말씀에 异議 있으십니까?</p> <p>(「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p> <p>지금 康明秀委員으로부터 서울特別市都市開發公社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해서修正案을 動議하였는데 이 動議에 再請 있으십니까?</p> <p>(「再請합니다」하는 委員 있음)</p> <p>康明秀委員이 發議한修正하자는 動議案이 成立되었으므로 바로 議題로 삼아 處理하겠습니다.</p> <p>이 動議에 대하여 또 다른 意見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p> <p>(「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p> <p>康明秀委員의 修正案을 우리 委員會案으로 議決코자 하는데 异議 없으십니까?</p> <p>(「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p> <p>그리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p> <p>(議事棒 3打)</p> <p>.....</p> <p>(參照)</p> <p>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p> <p>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제1조의2(경영의 기본원칙) 공사는 항상 공사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p>
--	---

<p>하여야 한다.</p> <p>제 4 조제 1 항중 “1조원”을 “1조5천억 원”으로 한다.</p> <p>제 5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 5조(정관)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목적</li> <li>2. 명칭</li> <li>3. 사무소의 소재지</li> <li>4. 자본금에 관한 사항</li> <li>5. 사업에 관한 사항</li> <li>6. 임직원에 관한 사항</li> <li>7. 이사회에 관한 사항</li> <li>8.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li> <li>9. 사채발행 및 기채에 관한 사항</li> <li>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li> <li>11. 공고에 관한 사항</li> <li>12. 공사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li> <li>13. 기타 필요한 사항</li> </ol> <p>②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을 거쳐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p> <p>제 9 조제 1 항중 “투자관리판”을 “재정기획판”으로 한다.</p> <p>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제10조의2(임기만료임원에 의한 직무대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li> <li>2.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li> </ol> <p>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19조(대행업무의 비용부담등) 공사는 도시개발과 관련된 시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으며 공사가 시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시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범위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3조의 범위와 같다.</p> <p>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21조(예산) ①공사는 매사업년도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년도 개시 35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시장은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p> <p>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제21조의2(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공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년도 개시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 년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p> <p>제2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 준비금은 이익금으로 이월 결손금을 보존한 후 그 잔액의 20분의 1이상을 자본금액의 2분의 1에 달할때까지 적립하며,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준비금의 적립과 사용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p> <p>제4장에 제27조의2 내지 제27조의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제27조의2(선수금) ①공사는 공사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선수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등을 정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제27조의3(재정지원) 시장은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p> <p>제27조의4(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요물자의 구매와 시설공사 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제27조의5(물품관리) 공사는 그 소관에 속하</p>
--	--

<p>는 물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공사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표준화하고, 사용 및 처분의 목적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물품 수급 계획을 포함한 물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제30조의2(경영평가 및 지도) ①시장은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경영원칙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는 매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p> <p>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中 新築建築物에 대한 用語定義를 분명히 해서 適用上의 混亂을 防止하고, 두번 째는 市長에게 申告하도록 되어 있는 共同住宅事業地區 内 權利 變動 申告를 事業 施行者인 都市開發公社에 直接 申告하도록 해서 住民의 不便을 段도록 했습니다.</p> <p>그 다음에 既存 建築物의 全面 撤去가 수반되는 共同住宅 建設時에는 地區 内 國·公有地 有無와 關係敘이 土地 또는 建築物 所有者 總數의 각각 2/3以上의 同意를 얻도록 해서 事業이 원활히 推進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p> <p>다음에 建蔽率, 容積率, 垦地面積 최소한도, 建築物 높이제한 등에 있어서 建築法 適用의 特例로 規定한 母法의 第9條 規定과 現行 條例規定 解釋上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建築法에서 정하는 地域地區 안에서의 建蔽率 등에 대한 規定을 확실히排除하도록 明文化했습니다.</p> <p>그 다음에 駐車難 解消를 위해서 特例者 및 新築建築物에 대한 駐車難 設備基準을 우리 市에 있는 駐車場設置및management條例에 따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p> <p>그 다음에 非住居用 建築物이 占有하고 있는 國·公有地 賣却規模를 新築建築物일 경우에는 165m<sup>2</sup> 以下로 해서 住居用 建築物과 평평을 維持시켰고, 國·公有地는 改善計劃樹立後 建築 許可하기 前까지 買收도록 하고, 賣却代金 決定은 地方財政法을 準用도록 明文化해서 業務處理와 方法을 자세하게 이렇게 했습니다.</p> <p>以上 간략히 說明드렸습니다만 자세한 內容은 新舊條文對比表를 參考해 주시고, 이것이 이번에 改正이 되어서 住居環境改善事業 推進하는데 활발히 推進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p> <p>以上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p> <p>○委員長 朴泰源 住宅局長 수고하셨습니다.</p> <p>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어야 되는데 油印物이 있는데 油印物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p>
---	---